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복수의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접속설비를 설치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및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 개념을 신설하고, 동 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단위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2조 및 제7조의4).
-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 대신 허가권자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허가권자는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함(제7조제2항·제3항).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기사업자 및 전기사업 관련 설비의 관리와 전기사업 인·허가등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기사업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신고·인가·허가취소·과징금 부과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보유·관리·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3).
-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 및 공동접속설비를 벌칙·과태료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관련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안 제100조, 제101조, 제103조, 제105조, 제106조, 제108조).

II. 검토의견

1.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및 사업자에 대한 준용 규정 관련(안 제7조의4제5항)

안 제7조의4제5항에서는 현행 「전기사업법」 규정 중 전기사업 및 그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일부 규정을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 및 그 사업자에게도 일부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전기사업법」 규정 중 준용하는 조문 >

준용되는 조문	조문 내용
제5조	전기설비 설치시 환경보호에 필요한 조치 마련
제8조제1항	전기사업 허가 결격사유
제9조	허가권자가 지정한 준비기간에 전기설비 설치 및 사업개시 의무
제10조 제1항(제3호 제외)~제3항	허가권자의 인가를 받고 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합병
제10조의2	경매 등에 따라 시설인수를 한 경우 기후부장관에게 신고
제11조제1항 및 제3항 (전기신사업자 부분 제외)	전기사업자 지위 승계
제11조의2	제11조에 따른 지위 승계시 종전 사업자에 대한 제12조에 따른 사업정 치처분 효과도 승계
제13조	허가권자자 허가 및 등록 취소시에는 청문 개최 의무
제22조	허가권자는 공공의익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사실조사
제26조	전기설비 시설계획 작성 및 변경시 기후부장관에게 신고의무
제57조	전기사업자 등의 분쟁발생시 전기위원회에 재정 신청
제61조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신고) 의무
제63조	전기설비 공사후 사용전검사 의무
제64조	전기설비 임시사용
제68조	전기설비 유지
제69조	물밑선로 보호 조치
제70조	물밑선로보호구역의 선로 손상행위 금지
제71조	전기설비 등이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하기 위한 허가권자의 조치 명령
제72조	전기설비간 상호장애 발생시 설비의 이설 등
제72조의2	가공전선로의 이중이설
제87조	다른 자의 토지 등의 사용
제88조	다른 자의 토지등에서 출입
제89조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등의 사용
제89조의2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제90조	토지의 일시사용 등에 대한 손실보상
제90조의2	토지의 지상 등의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
제91조	일시사용이 끝난 토지등의 원상회복

준용되는 조문	조문 내용
제92조	공공용 토지의 사용
제97조	사용전검사에 대한 수수료 납부

그런데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및 사업자에 대하여 준용되는 조문 중 현행 「전기사업법」 제70조¹⁾는 해상풍력발전기의 공동접속설비가 물밑선로에 해당되므로 선로 손상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준용되는 조문인바,

전기사업자를 의무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조문과 달리 제70조는 물밑선로보호구역의 선로 손상행위 금지 의무주체를 “누구든지”로 규정하고 있어 모든 사람이 해당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101조제7호에 따라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²⁾이 가능하여 준용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현행법상 그 효력을 담보할 수 있으므로 준용 규정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한편, 안 제7조의4제5항에서는 현행 「전기사업법」 제87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바, 제87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에는 제89조의2(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제90조의2(토지의 지상 등

1) 「전기사업법」 제70조(물밑선로보호구역의 선로 손상행위 금지) 누구든지 제69조에 따른 물밑선로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물밑선로를 손상시키는 행위
2. 선박의 닻을 내리는 행위
3. 물밑에서 광물·수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4. 그 밖에 물밑선로를 손상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전기사업법」 제10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併科)할 수 있다.

7. 제70조를 위반하여 물밑선로를 손상하거나 손상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의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인 가지번호가 붙은 조문이 포함되어 있고, 이 경우 가지번호를 명확히 명시하여 해당 규정도 준용됨을 명확히 표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수정의견을 제시함.

개 정 안	수정의견
제7조의4(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 사업의 허가 등) ⑤ 재생에너지공 동접속설비건설사업 및 그 사업자 에 관하여는 제5조, 제8조제1항, 제 9조, 제10조제1항(제3호는 제외한 다)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의2, 제11 조제1항 및 제3항(전기신사업자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11조의2, 제13조, 제22조, 제26조, 제57조, 제 61조, 제63조, 제64조, 제68조, <u>제69 조, 제70조, 제71조</u> , 제72조, 제72 조의2, <u>제87조부터 제92조까지</u> 및 제97조를 준용한다. (이하 생략)	제7조의4(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 업의 허가 등) ⑤----- ----- ----- ----- ----- ----- ----- <u>제69조, 제71조,</u> - ----- <u>제87조부터 제89조까지, 제89조의2,</u> <u>제90조, 제90조의2, 제91조, 제92조-</u> ----- . (이하 생략)

2. 전기사업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관련(안 제24조의3)

안 제24조의3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사업자 및 전기사업 관련 설비(자가용전기설비를 포함)의 관리와 전기사업 인·허가등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기사업에 관한 통합관리시스템(전기사업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제1항), 이러한 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보유·관리 및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제2항).

그런데 안 제24조의3제2항제12호에서는 전기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보유·관리할 필요가 있는 정보로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사용전검사에 관한 정보³⁾ 즉, 자가용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에 관한 정보만 규정하고 전기사업용전기설비에 관한 정보(「전기사업법」 제63조)⁴⁾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설비 관련 정보 중 일부만 포함될 여지가 있어 관련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법문을 수정함.

개 정 안	수정의견
제24조의3(전기사업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사업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보유·관리 및 처리할 수 있다. 12.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사용전검사에 관한 정보	제24조의3(전기사업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사업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보유·관리 및 처리할 수 있다. 12. <u>제63조</u>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사용전검사에 관한 정보

3)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사용전검사) 제8조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전기사업법」 제63조(사용전검사) 제61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가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61조(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①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부칙

(1) 시행일

개정안은 부칙에서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
되,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25
조제6항제5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50조제1항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부칙(시행일)에 따라 안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것이 예정되나,
해당 규정은 현행 전기사업에 대한 허가권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경매 등에 따른 시설인수에 따른 신고권자(기후에
너지환경부장관)가 불일치하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국민의 권
리·의무에 대한 영향이나 별도의 행정적인 준비기간이 필요하지 않아
공포 후 즉시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이를 반
영하여 다음과 같이 부칙(시행일)을 수정함.

부칙(안)	수정의견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한다. 다만, <u>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5조제6항제5호 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 행하며, 제50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u>	<u>제1조(시행일)</u> ----- -----, <u>제10조의2제1항 및 제25조제6항제5호의3의 개정규 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0 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 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u>

호의3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	-----------------

(2) 적용례

개정안은 부칙에서 시행일 외에 적용례 등 다른 부칙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안 제12조제1항제5호는 전기사업의 양수 또는 법인의 분할·합병에 대한 인가 대상에 경영권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의 취득을 한 경우 허가권자가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그 위반시 행정적 제재가 가능하므로 신법에 따른 적용 대상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바, 시행일만으로는 새로 시행되는 법률의 적용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부칙에 적용례를 두되, 기존 법적 지위에 대한 신뢰보호를 위해 이 법 시행 이후 경영권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을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부칙의 수정의견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함.

부칙(안)	수정의견
<신 설>	<u>제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영권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의 취득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u>

그 밖에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 이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주서본 참조).

(전문위원 이 세 진)